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35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¹⁾
피고, 피항소인 ○○출장소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6459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53,629,520원, 지방교육세 1,62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대표자인 F은 자기 자신인 F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사실상 자신을 소송대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나 ○

판사 송○○